

물품공급계약서

| ㈜조이젠 (이하 | '판매사' | 라고 한다)과 | (이하 | '공급사' | 라고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체결하고 이의 성 | 실하 준수 | 를 확약하다. | | | |

제1조(총칙)

- 1. 공급시는 공급사의 생산 또는 수입/유통제품(이하'상품'이라 함)을 판매사에게 공급하고, 판매시는 공급사에게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권리를 취득한다.
- 2. 공급사는 판매사의 경영 및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하여 판매사의 활동에 대한 지원, 독려할 수 있으며, 공급사는 판매사가 영업상 필요한 정보, 기술 지원을 요구 시 판매사에게 지원한다. 또한 판매사는 공급사의 요청에 따라 판매사의 경영 및 영업 상태를 제공하고, 공급사가 상품 판매 계획에 필요한 시장 정보 등 제반 자료를 제공한다.

제2조(상품및서비스등록)

- 1. 공급사는 판매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법적 품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2. 공급시는 판매시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판매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상품정보 및 서비스 규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3. 판매사가 정한 양식에 어긋난 정보나 허위정보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.
- 4. 공급시는 판매사가 등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어떠한 허위, 과장 광고도 해서는 안되며, 문제 발생 시 공급시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.
- 5. 공급시는 등록 이후에 상품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등록한 시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시에 통보해야 하며,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.

제3조(판매과정)

- 1. 판매시는 공급사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, 공급시는 판매시가 지정한 곳으로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된 제품과 납품 제품이 다를 경우 공급시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2. 직 발송 업체인 경우 판매시는 주문자 정보, 제품 구매내역 등을 공급사에게 지정된 통보 방식에 의해 전달해야 하고 공급시는 24시간 안에 제품을 발송해야 한다.

제 4 조 (공급기격 및 판매기격)

- 1. 공급시는 판매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급 당시 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과 비교하여 최상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저의 가격대를 항상 보장하여야 한다.
- 2. 판매시는 쇼핑몰에 등록된 공급사의 상품이 다른 쇼핑몰의 가격대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등록된 상품의 전시 삭제 및 공급업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. 다만 공급시는 판매시에게 가격 조정을 위한 혐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3. 공급사와 판매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판매사에게 광고비 및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다.

제 5 조 (상품정보의 제공 의무)

- 1. 공급시는 판매시에게 제공한 상품정보를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, 만약 제공한 정보가 시실과 다르거나 변경시항이 생길 경우 즉시 판매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공급시는 판매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 상품들의 가격 추이와 재고 현황을 항시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에 변동이 있거나 재고 수급 및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판매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공급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사에게 상품정보, 가격 변동 및 재고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체할 시구매철회, 구매계약의 해지, 또는 그로 인한 비용 및 고객에 대한 배상금 등은 전적으로 공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4.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 및 상품 DB의 저작권과 관련해 공급사는 판매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판매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 공급사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판매사는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상품등록을 진행하며, 추후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-형사상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.



제 6 조 (교환 취소 반품, 보상)

- 1. 주문자의 요청에 의한 교환, 주문취소, 반품, 보상에 대하여는 공급사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.
- 2. 단순 반품 배송비용은 주문자가 부담(판매사 거래 서비스 기준)하고 초기 불량으로 인한 교환—배송비용은 판매사의 요청에 의해 공급사에게 청구한다.
- 3. 직 발송 업체인 경우는 모든 책임이 공급사에게 있으며 판매사의 거래 서비스 기준에 의거하여 교환, 취소, 반품, 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
- 4. 공급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사가 책임을 지며, 미해결로 인해 판매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는 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.
- 5. 판매사의 거래 서비스에 등록된 공급사의 제품에 대해 재고가 없는 상품이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사는 그와 상응한 제품이나 상위 제품으로 대체해 공급한다.
- 6. 판매시는 공급사에게 상품 판매일로부터 ____일 이내의 상품에 대한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시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- 7. 판매시는 공급사에게 반품을 완료한 후 반품 대금을 당일 지급 처리한다.
- 8. 공급시는 소비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환 및 반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.

제7조(대금결제)

- 1. 공급시는 반드시 법인계좌 또는 대표자 통장을 결제 통장으로 지정해야 한다.
- 2. 판매사가 구매한 상품 총액과 공급사의 장부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공급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판매사에게 발행하여야 한다.
- 3. 공급시는 판매시에게 판매 완료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며 판매시는 주단위로 결제를 한다.
- 4. 공급시는 판매시가 미판매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.
- 5. 판매시는 공급사에게 미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6. 판매사와 공급시는 매년 부가세 확정신고 시점(6월, 12월)에 양사 간 거래실적 및 거래잔액에 대한 확인서를 교환하다.
- 7. 위 결제 조건의 변경 시 공급사와 판매시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결제 방법을 진행하고, 공급시는 판매사에게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 등의 검증된 담보를 제공하여 상호 신뢰를 비탕으로 원만한 거래를 진행한다.

제 8 조 (기밀유지)

판매시와 공급시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 계약 종료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시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,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

제 9 조 (통지의무 및 권리양도)

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.

제 10 조 (계약기가 및 계약해지)

- 1. 본 계약의 유효일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2. 계약 만료 30일 이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시항의 변경, 해지 등에 관한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 11 조 (판매자 등록 및 취소)

- 1. 공급시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소재지, 전화번호, 거래 은행 명, 거래은행 계좌, 담당자 등 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판매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2. 판매사가 정한 기준에 어긋난 정보나 허위정보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.
- 3. 공급시는 판매자 등록 이후에 시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및 거래 은행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변경시항에 대해 즉시 판매시에 통보해야 하며,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시에게 있다.

제 12 조 (해제 또는 해지)

- 1.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중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후, 상대방의 성실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2. 어느 일방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

(인)

- 1) 당시자 일방이 파산신청,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- 2) 본 계약에서 정한 공급사의 업무내용이 공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- 3) 당시자 일방에 '서비스'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, 상대방에게 그런 사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
- 4)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5) 가입시가입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6) 제품에 하자가 많은 경우

제 13 조 (구매물품 보수 유지 또는 시후서비스 처리)

| ., | CONTRACTOR OF THE CONTRACTOR O |
|--------|--|
| 1. | 공급시는 판매사의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, 성실한 |
| |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 |
| 2. | 사후서비스 기간은 판매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 이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. |
| 3. | 사후서비스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손실 및 책임은 공급사가 지도록 한다. |
| 4. | 공급사가 물품에 대한 보수 유지 또는 사후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판매사는 공급사에 대한 결제대금을 일정 |
| | 기간 지급 보류할 수 있다. |
| 5. | 구매 물품 : |
| 6. | 월 구매 금액 :원 |
| 7. | 공급시는 사후서비스에 대한 "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"을 제출해야 한다. |
| | (공급시는 판매시에게 계약금액원의원이 해당하는 |
| | 금액원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. |
| | 보험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(일간) *보험기간 완료 |
| | 시 판매시는 공급사에게 재갱신을 청할 수 있다.) |
| | |
| 제 14 조 | : (서비스의 중단) |
| | 판매시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-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|
| |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판매시는 공급시에게 통지한다. |
| | |
| 제 15 조 | : (보칙 및 합의 관할) |
| 1. | 공급사는 공급하는 상품의 유통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품전시 전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|
| | 완료하고, 상품의 공급과 관련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시항을 적법하게 준수해야 한다. 이에 대한 불이행 시 |
| |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나 비용 발생은 공급사가 책임을 진다. |
| 2. | 본 계약과 관련해 판매사와 공급사가 체결한 약정서, 별도 합의서, 부대 합의서 등은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|
| | 갖는다. 단, 상호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유효하게 체결된 문서를 우선으로 한다. |
| |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사와 공급사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. |
| 4. |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사와 공급사의 일체의 분쟁은 판매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합의 |
| | 관할법원으로 한다. |
| | |
| | |
| | 년 월 일 |
| | |
| | |

| 판매사 | | 공급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상호 : ㈜ 조 이젠 | | 상호 : |
| 시업자 등록번호 : 106-86- | 사업자 등록번호 : | |
|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 전자타운상가 A동 1,2 | 주소 - | |
| 대표자: 조호진 | (인) | 대표자 : |